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 호반써밋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만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하며, 견본주택에서 청약 신청 시(10:00 ~ 14:00) 자격인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가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 (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본 안내문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을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2023.06.15.(목) 예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19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7개동 총 856세대 중 사전당첨세대 제외 555세대
- 입주예정 : 2026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배정(안)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84.6243A	84.7757B	84.7184C	합계		
약식표기			84A	84B	84C			
일반공급 세대수			324	109	122	555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팔호안의 숫자는 예비입주자 세대수)	일반 (기관추천)	장애인	인천광역시	6(30)	2(10)	2(10)	10(50)	
			서울특별시	3(15)	1(5)	1(5)	5(25)	
			경기도	3(15)	1(5)	1(5)	5(25)	
			소계	12(60)	4(20)	4(20)	20(100)	
		국가유공자			4(20)	1(5)	0(0)	5(25)
		장기복무 제대 군인			3(15)	1(5)	1(5)	5(2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15)	1(5)	1(5)	5(25)
		중소기업 근로자			2(10)	2(10)	2(10)	6(30)
		북한이탈 주민			3(15)	0(0)	1(5)	4(20)
		납북피해주민			3(15)	0(0)	1(5)	4(20)
		우수선수			3(15)	1(5)	1(5)	5(25)
		이주대책 대상자			1(5)	0(0)	0(0)	1(5)
		소계			34(170)	10(50)	11(55)	55(275)

II 공급일정 안내(예정)

구분	공급일정 (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3년 06월 15일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간지 및 분양홈페이지 (http://www.gd5-hoban.co.kr) ● 분양문의 : 1670-2413 (10:00 ~ 18:00)
건본주택 개관	2023년 06월 15일 (목)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3년 06월 26일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ome(www.applyhome.co.kr) (09:00 ~ 17:3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신청 시 (10:00 ~14:00) ※ 자격입증 서류지참 필수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3년 07월 04일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계약 체결	2023년 07월 17일 (월)~ 2023년 07월 20일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건본주택 ● 시간 : 10:00 ~ 16:00

※ 위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당사 건본주택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특별공급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분
- 청약통장 가입 요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구 분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조제3항에 의거 해당 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구성원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3.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당첨자 선정 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급하고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 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IV 유의사항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민간사전청약 단지로서 사전당첨자의 세대수 우선 배정 이후 특별공급 및 일반분양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형, 추천기관명, 연락처 등)
- 당첨자 발표일이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과 동일하게 변경됨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동일주택 내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고 특별공급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며, 동일 세대내 중복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가(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등) 중복 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 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 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3.04.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